

의과대학 교원인사 규정

[제정 2009. 3. 1.]
 [개정 2011. 9. 1.]
 [개정 2012. 7.22.]
 [개정 2013. 3. 1.]
 [개정 2013. 9. 1.]
 [개정 2014. 9. 1.]
 [개정 2015. 3. 1.]
 [개정 2015. 9. 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9. 1.]
 [개정 2017. 9. 1.]
 [개정 2018. 9. 1.]
 [개정 2019.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인제학원 정관’과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1장 제2조에 따라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2., 2014.9.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7.22., 2014.9.1.>

제2조의2(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초의학교원, 임상의학교원, 인문사회의학교원, 간호학교원, 교육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4.9.1.>

1. 기초의학교원: 기초의학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신설 2014.9.1.>
2. 임상의학교원: 임상학과 관련한 ‘교육, 연구, 진료’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신설 2014.9.1.>
3. 인문사회의학교원: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및 사회의학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신설 2014.9.1.>
4. 간호학교원: 간호학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신설 2014.9.1.>
5. 교육중심교원: 교육을 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신설 2014.9.1.>
6. 연구중심교원: 연구를 주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신설 2014.9.1.>

② 의과대학은 위 1항 이외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4.9.1.>

제3조(신규임용) ① 신규임용은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규임용교원의 직급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의과대학 교원임용 기준표’(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2.7.22.>

② 신규임용 대상자는 <별표 5>의 각 직급별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2.7.22.>
 <개정 2014.9.1., 2015.3.1., 2017.9.1>

1. 삭제 <2014.9.1.>

2. 삭제 <2014.9.1.>

3. 삭제 <2014.9.1.>

③ 신규임용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의학교육관련 연수를 임용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2.7.22.>

④ 신규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9.1.>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9.1.>

2. 부교수 : 6년<신설 2014.9.1.>

3. 조교수 : 3년<신설 2014.9.1.>

제3조의2(공개채용) ① 신규임용 공개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9.1.>

1.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과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등을 심사한다.<신설 2014.9.1.>

2. 성과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교육 및 연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심사한다.<신설 2014.9.1.>

3. 면접심사 : 공개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적합성을 심사한다.<신설 2014.9.1.>

4. 예정자심사 :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심사한다.<신설 2014.9.1.>

② 제1항의 공개채용 과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책임하에 진행한다.<신설 2014.9.1.>

③ 전공심사 및 성과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4.9.1.>

④ 공개채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신설 2014.9.1.>

1. 교수초빙 계획을 수립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접수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신설 2014.9.1.>

2. 전공심사, 성과심사, 면접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계를 통합
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9.1.>

3. 각 단계별 심사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신설 2014.9.1.>

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임용예정자의 최종 임용여부는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4.9.1.>

제4조(재임용의 절차) 재임용의 절차는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22.>

제5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임용 심의를 위한 최소업적기준을 제외하고는,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22.>

② 각 직급별 재임용심의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별표 6>의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7.22., 2014.9.1., 2017.9.1>

제6조(승진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제
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22.>

제7조(승진임용의 심사기준) ① 교원이 승진임용 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 7>과 같이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와 최소 업적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7.22., 2014.9.1., 2015.3.1.,
2017.9.1.>

② 조교수에 한하여 본교 신규임용 전 경력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교수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2017.9.1.>

③ 삭제 <2012.7.22.>

④ 삭제 <2012.7.22.>

⑤ 삭제 <2012.7.22.>

⑥ 삭제 <2012.7.22.>

⑦ 인문사회의학 분야를 겸임하는 교원(이하 “전담교원”이라 한다.)의 연구업적평가에 한하여 해당 분야 전임교원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3.1., 2014.9.1.>

제8조(연구업적평가) ① 연구업적은 해당 전공학문의 지성적,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포함하며, 연구업적 실적물의 인정범위 및 평가 가중배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연구업적 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2.7.22.,2017.9.1 >

1. 삭제 <2012.7.22.>

2. 삭제 <2012.7.22.>

3. 삭제 <2012.7.22.>

4. 삭제 <2012.7.22.>

5. 삭제 <2012.7.22.>

6. 삭제 <2012.7.22.>

③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의 인정은 학위 취득 당해 직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2.7.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 승진임용의 심사기준 중 ‘연구업적 최소 실적’ 및 ‘국외 SCI(E) 최소 논문 수’는 200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바로 적용하며, 2009년 3월 1일 당시 전임강사의 경우 부교수 승진심사부터, 조교수의 경우 교수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

② 현 직급에서 상위 직급의 승진 시 반영하는 ‘연구업적 최소 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은 2009년 2월 28일까지는 재직 당시의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구 분 \ 현 직급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	조교수 → 부교수 승진	부교수 → 교수 승진	비 고
1.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	2년	4년	5년	
2. 연구업적 최소 실적물	200%	300%	350%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3. 교육업적 최소 점수	3점	6점	8점	
4. 봉사업적 최소 점수	1점	4점	5점	직급기간 내 봉사업적을 통산함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2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1일 이전 임용자의 승진심의를 위한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와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수승진 대상자와 조교수로 임용된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2009년 2월 28일 이전의 ‘인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교수의 경우 차상위 직급인 교수승진심사에서는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을 적용한다.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와 연구업적 최소실적(2009년 2월 28일 이전)

구 분 \ 현 직급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	조교수 → 부교수 승진	부교수 → 교수 승진	비 고
1.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	2년	4년	5년	
2. 연구업적 최소 실적물	200%	300%	350%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2. 2009년 3월 1일 이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수승진 대상자와 조교수로 임용된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2009년 3월 1일 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교수의 경우 차상위 직급인 교수승진심사에서는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을 적용한다.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와 연구업적 최소실적(2009년 3월 1일 제정)

구 분	조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비 고
1.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	2년	4년	5년	
2. 연구업적 최소 실적	200%	400%	500%	
3. 국외 SCI(E) 최소 논문 편수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가. 기초의학 의사교원	3(1)편	6(2)편	8(3)편	
나. 기초의학 비의사교원	4(2)편	8(4)편	10(5)편	
다. 임상의학 교원	1(0)편	1(1)편	2(1)편	
라. 연구중점 비의사교원	6(3)편	12(6)편	15(8)편	
마. 간호학 교원	-	1(0)편	1(1)편	
주1) 연구중점비의사교원은 학생교육 및 임상진료업무 보다는 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 주2) 국외SCI(E) 최소 논문 수 중 괄호 안에 제시한 논문 수는 심의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 수이다.				

3.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직급이 변경되는 교원이 부교수 승진 대상자가 되는 경우 2012년 7월 21일 이전 재직기간은 2009년 3월 1일 제정 규정을 적용하고 2012년 7월 22일 이후 재직기간은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을 승진심의에 적용한다. 이 때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는 전임강사 재직기간과 조교수 재직기간의 합이 6년 이상이면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의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급별 교육업적 최소점수’와 ‘봉사업적 최소 점수’는 2009년 2월 28일까지의 재직기간 동안은 재직당시의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는 2009년 3월 1일 제정규정을 적용하고, 2012년 7월 22일부터는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을 적용한다.

직급별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 최소 점수(2009년 2월 28일 이전)

구 분 \ 현 직급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	조교수 → 부교수 승진	부교수 → 교수 승진	비 고
1. 교육업적 최소 점수	3점	6점	8점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2. 봉사업적 최소 점수	1점	4점	5점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직급별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 최소점수(2009년 3월 1일 제정)

구 분	조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비 고
1. 교육업적 최소점수				직급기간 내 교육업적을 통산함
가. 기초의학 의사교원	10점	20점	25점	
나. 기초의학 비의사교원	6점	12점	15점	
다. 임상의학 교원	3점	6점	7.5점	
라. 진료지원 임상 비의사 교원	1점	2점	2.5점	
마. 치과학 교원	1점	2점	2.5점	
바. 연구중점 비의사교원	0.5점	1점	1.25점	
사. 간호학 교원	10점	20점	25점	
2. 교육관련 연수 최소시간	4시간	8시간	10시간	
3. 봉사업적 최소점수				직급기간 내 봉사업적을 통산함
가. 연구중점 비의사교원	1점	2점	2.5점	
나. 기타 전체 교원	2점	4점	5점	
주1) 연구중점 비의사교원은 학생교육 및 임상진료업무 보다는 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재임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2일 이후 신규임용, 승진임용자의 재임용심의회는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을 적용한다.

② 2012년 7월 21일 이전 임용자의 재임용심의를 위한 ‘직급별 최소 업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재임용심의 대상자의 경우 2009년 2월 28일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직급별 재임용 최소 업적 기준(2009년 2월 28일 이전)

구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 연구업적 최소 실적물	150%	200%	350%
2. 교육업적 최소 점수 (임상 비의사교원과 치과학 교원)	3점 (1점)	4.5점 (1.5점)	9점 (3점)
3. 봉사업적 최소 점수	1점	3점	6점

2. 2009년 3월 1일 이후에 조교수로 신규임용,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된 재임용심의 대상자의 경우 2009년 3월 1일 제정기준을 적용한다.

직급별 재임용 최소 업적기준(2009년 3월 1일 제정)

구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 연구업적 최소실적물	150%	200%	350%
2. 교육업적 최소점수 (임상 비의사교원과 치과학 교원)	3점 (1점)	4.5점 (1.5점)	9점 (3점)
3. 봉사업적 최소점수	1점	3점	6점

3. 2012년 7월 21일 이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교원으로 2012년 7월 22일 조교수로 승진한 경우는 2012년 7월 21일 이전 재직기간은 2009년 3월 1일 규정을 적용하고 2012년 7월 22일 이후 재직기간은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을 적용한다. 이 때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는 전임강사 재직기간과 조교수 재직기간의 합이 6년 이상이면 이 규정(2012년 7월 22일 개정)의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이 규정(2014년 9월 1일 개정)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8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승진심의를 위한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와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수승진 대상자와 조교수로 임용된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2009년 2월 28일 이전의 ‘인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교수의 경우 차상위 직급인 교수승진심사에서는 이 규정(2014년 9월 1일 개정)을 적용한다.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와 연구업적 최소실적(2009년 2월 28일 이전)

구 분 \ 현 직급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	조교수 → 부교수 승진	부교수 → 교수 승진	비 고
1.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	2년	4년	5년	
2. 연구업적 최소 실적물	200%	300%	350%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2. 2009년 3월 1일 이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수승진 대상자와 조교수로 임용된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2009년 3월 1일 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교수의 경우 차상위 직급인 교수승진심사에서는 이 규정(2014년 9월 1일 개정)을 적용한다.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와 연구업적 최소실적(2009년 3월 1일 제정)

구 분	조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비 고
1.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	2년	4년	5년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2. 연구업적 최소 실적	200%	400%	500%	
3. 국외 SCI(E) 최소 논문 편수				
가. 기초의학 의사교원	3(1)편	6(2)편	8(3)편	
나. 기초의학 비의사교원	4(2)편	8(4)편	10(5)편	
다. 임상의학 교원	1(0)편	1(1)편	2(1)편	
라. 연구중점 비의사교원	6(3)편	12(6)편	15(8)편	
마. 간호학 교원	－	1(0)편	1(1)편	
주1) 연구중점비의사교원은 학생교육 및 임상진료업무 보다는 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 주2) 국외SCI(E) 최소 논문 수 중 괄호 안에 제시한 논문 수는 심의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 수이다.				

3.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직급이 변경되는 교원이 부교수 승진 대상자가 되는 경우 2012년 7월 21일 이전 재직기간은 2009년 3월 1일 제정 규정을 적용하고, 2012년 7월 22일에서 2014년 8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은 2012년 7월 22일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재직기간은 이 규정(2014년 9월 1일 개정)을 승진심의에 적용한다. 이 때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는 전임강사 재직기간과 조교수 재직기간의 합이 6년 이상이면 이 규정(2014년 9월 1일 개정)의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급별 교육업적 최소점수’와 ‘봉사업적 최소 점수’는 2009년 2월 28일까지의 재직기간 동안은 재직당시의 ‘인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는 2009년 3월 1일 제정규정을 적용하고,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는 2012년 7월 22일 제정규정을 적용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는 2013년 3월 1일 규정을 적용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는 이 규정(2014년 9월 1일 개정)을 적용한다.

직급별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 최소 점수(2009년 2월 28일 이전)

구 분 \ 현 직급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	조교수 → 부교수 승진	부교수 → 교수 승진	비 고
1. 교육업적 최소 점수	3점	6점	8점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2. 봉사업적 최소 점수	1점	4점	5점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직급별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 최소점수(2009년 3월 1일 제정)

구 분	조교수 승진	부교수 승진	교수 승진	비 고
1. 교육업적 최소점수				직급기간 내 교육업적을 통산함
가. 기초의학 의사교원	10점	20점	25점	
나. 기초의학 비의사교원	6점	12점	15점	
다. 임상의학 교원	3점	6점	7.5점	
라. 진료지원 임상 비의사 교원	1점	2점	2.5점	
마. 치과학 교원	1점	2점	2.5점	
바. 연구중점 비의사교원	0.5점	1점	1.25점	
사. 간호학 교원	10점	20점	25점	
2. 교육관련 연수 최소시간	4시간	8시간	10시간	직급기간 내 봉사업적을 통산함
3. 봉사업적 최소점수				
가. 연구중점 비의사교원	1점	2점	2.5점	
나. 기타 전체 교원	2점	4점	5점	
주1) 연구중점 비의사교원은 학생교육 및 임상진료업무 보다는 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				

직급별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 최소 점수(2012년 7월 22일 개정)

구 분 \ 현 직급	조교수 → 부교수 승진	부교수 → 교수 승진	비 고
1. 교육업적 최소 점수	4점	2.5점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2. 봉사업적 최소 점수	5점	5점	직급기간 내 연구업적을 통산함
3. 교육관련 연수 최소 시간	15시간	15시간	직급기간 내 연수시간을 통산함

제4조(재임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된 재임용심의 대상자는 이 규정(2014년 9월 1일 개정)을 적용한다.

② 2014년 8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재임용심의를 위한 ‘직급별 최소 업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현 직급으로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된 교원 중 재임용 심의대상자는 2009년 2월 28일 이전의 ‘인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9.1.>

직급별 재임용 최소 업적 기준(2009년 2월 28일 이전)

구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 연구업적 최소 실적물	150%	200%	350%
2. 교육업적 최소 점수 (임상 비의사교원과 치과학 교원)	3점 (1점)	4.5점 (1.5점)	9점 (3점)
3. 봉사업적 최소 점수	1점	3점	6점

2. 2009년 3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 이전에 현 직급으로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된 교원 중 재임용 심의대상자의 경우 2009년 3월 1일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9.1.>

3.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현 직급으로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된 교원 중 재임용 심의대상자의 경우 2012년 7월 22일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9.1.>

4.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이전에 현 직급으로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된 교원 중 재임용 심의대상자의 경우 2013년 3월 1일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9.1.>

직급별 재임용 최소 업적기준(2009년 3월 1일 제정)

구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 연구업적 최소실적물	150%	200%	350%
2. 교육업적 최소점수 (임상 비의사교원과 치과학 교원)	3점 (1점)	4.5점 (1.5점)	9점 (3점)
3. 봉사업적 최소점수	1점	3점	6점

직급별 재임용 최소 업적기준(2012년 7월 22일 개정)

구분	조교수	부교수
1. 연구업적 최소실적물 기초의학교원·간호학교원 임상의학교원	250% 85%	750% 250%
2. 교육업적 최소점수	1.5점	3점
3. 봉사업적 최소점수	2점	6점

5.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직급이 변경되는 교원의 경우는 2012년 7월 21일 이전 재직기간은 2009년 3월 1일 규정을 적용하고 2012년 7월 22일에서 2014년 8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은 2012년 7월 22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 직급별 최저 소요 연수는 전임강사 재직기간과 조교수 재직기간의 합으로 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 승진임용 심사기준 중 직급별 최저소요연수와 업적 및 연수시간 산정기간을 승진예정일 기준 부교수 승진심의대상자는 최근 6년 이내, 교수 승진심의대상자는 최근 5년으로의 적용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바로 적용하며, 2017년 8월 31일 당시 조교수의 경우는 차상위 직급인 교수 승진심사부터 이 규정(2017년 9월 1일 개정)을 적용한다.
- ③ ODA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의 연구업적 인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수혜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년 2월 28일 이전 임용자의 승진심의회에서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를 정할 때 <별표 7>에 따른다.

<별표 1> 의과대학 교원임용 기준표<개정 2012.7.22., 2014.9.1., 2016.3.1.>

구분		수련과정										교수직연한										교수승진 소요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기초 의학 교원	군필	조 교(3)		군복무(3)		조교수(7)							부교수(5)					11년				
		군복무(3)		조 교(3)																		
	군필(1년 단기)	군복무	조 교(3)		조교수(8)							부교수(6)					13년					
	군미필	조 교(3)		조교수(9)							부교수(6)					14년						
	군보류	조 교(3)		군복무(3)		조교수(7)							부교수(5)					11년				
임상 의학 교원	군필	전공의과정 4년	인턴	전공의(4)		군복무(3)		조교수(6)					부교수(5)					11년				
				군복무(3)		전공의(4)																
			군복무(3)		인턴	전공의(4)																
		전공의과정 3년	인턴	전공의(3)		군복무(3)													임상 강사 (1)			
				군복무(3)		전공의(3)																
			군복무(3)		인턴	전공의(3)																
	군필 (단기)	전공의과정 4년	군복무	인턴	전공의(4)		조교수(7)					부교수(6)					13년					
		전공의과정 3년			전공의(3)													임강				
	군미필	전공의과정 4년	인턴	전공의(4)		임강	조교수(7)					부교수(6)					13년					
		전공의과정 3년		전공의(3)		임강											조교수(8)					14년
※ 비 의 사 교 원	군필	석사(2)		박사(2)		군복무(2)		연구 강사	조교수(6)					부교수(5)					11년			
		군복무(2)		석사(2)		박사(2)																
	군필(1년 단기)	석사(2)		박사(2)		군복무		연강	조교수(7)					부교수(6)					13년			
		군복무	석사(2)		박사(2)																	
	군미필	석사(2)		박사(2)		연강		조교수(8)					부교수(6)					14년				

※ 비의사교원 : 제2조의 2에 정의한 교원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교원.

<별표 2> 의과대학 연구업적 실적물의 범위 및 평가가중배수<개정 2012.7.22., 2017.9.1., 2019.3.1.>

구 분			평가가중 배 수	비 고
학위논문*	석 사		1.0	
	박 사		2.0	
국외학술지*	SCI(E) 급		2.0	
국내학술지*	SCI(E) 급		1.5	SCOPUS 포함
	일 반		1.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편·역 서*			1.0	
특 허*	국 제	등 록	3.0	출원과 등록은 중복하여 인정하되, 출원 후 등록 시 등록 평가가중배 수의 50%만 추가 인정함.
		출 원	2.0	
	국 내	등 록	2.0	
		출 원	1.5	
저 서*	국 제	우 수	3.0	저서의 우수여부는 인정 요청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일 반	2.0	
	국 내	우 수	1.5	
		일 반	1.0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			1.0	연간상한 300%
대 학 논 문 지 및 기타 국내학술지 ^①			0.5	
학술회의 발표논문	국제 학회 주관 초청강연		1.0	
	국제 학회 주관 구두발표		0.7	
	국제 학회 주관 포스터발표		0.5	
	국내(전국규모) 학회 초청강연		0.7	
	국내(전국규모) 학회 구두발표		0.5	
	국내(전국규모) 학회 포스터발표		0.3	
보고서 (중앙관리분만 인정)	용역	국가용역	0.5	
		각종 교외용역	0.3	
	총장이 인정하는 인재대학교 명의의 각종 보고서(다만, 학술연구 목적 보고서는 제외함.)		1.0	

① 기타 국내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동료논문평가시스템(peer review system)을 갖춘 전문학술지이어야 한다.

“*”의 항목은 승진심사에서 반영하는 업적항목이다.

<별표 3-1>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점수(1) <개정 2012.7.22, 2014.9.1, 2015.9.1, 2016.9.1, 2018.9.1>

평가항목		배점점수	비고
수업 (학기별)	1-4시간	0.5	학생 강의 및 기초의학 실습 시간은 실시간으로 인정하며, 과정 책임교수 또는 간호학과장의 확인이 필요함. 대학원 계열필수 수업만 인정함. [병원, 타 대학 학생 강의는 인정하지 않음]
	5-8시간	1.0	
	9-16시간	1.5	
	17-32시간	2.0	
	33-64시간	2.5	
	65-96시간	3.0	
	97-128시간	3.5	
	129-160시간	4.0	
	161-192시간	4.5	
	193시간 이상	5.0	
임상실습 (학기별)	개인별 주간 계획표 확인	0.01	학생인턴 임상실습보고서에 담당교수가 직접 서명한 경우 인정하며, 주(책)임교수 및 해당 병원 임상교육연구부학장의 확인이 필요함
	일일 실습 내용과 실적 확인	0.01	
	외래 예진 지도	0.1	
	필수환자군 포트폴리오 확인	0.1	
	발표수업(중례토의) 지도	0.1	
	주간 성찰 저널 확인	0.01	
	기본임상술기 평가	0.1	
	관찰임상술기 평가	0.1	
	문제바탕소그룹토의 평가	0.1	
학생 면담 및 카운슬링 (학기별)	1-5회	0.5	학생 면담 및 카운슬링 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과대학 행정실에 보고하여야 인정함 [단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면담의 경우 학생 개인별 면담서 작성 건수로 대체함]
	6-10회	1.0	
	11-15회	1.5	
	16-20회	2.0	
	21-25회	2.5	
	26-30회	3.0	
	31-35회	3.5	
	36-40회	4.0	
	41-45회	4.5	
	46회 이상	5.0	
학생 교육과정 참여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	4.0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
	통합교육과정 부책임교수, 과목별 실습담당교수, 학년별 담임교수	3.0	
	학생 교육 관련 위원회* 위원장, 간사	2.0	
	학생 교육 관련 위원회* 위원	1.0	
	내과 분과 별 실습담당교수	1.0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교내외 학생교육 관련 연수	학생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 또는 학생교육관련 학회 강사 참여	1.0	1일 당 환산. 배점점수 × 참여일 수 강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적물(예, 모듈, 시험문항 등)을 학교에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학생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또는 학생교육관련 학회 단순 참여	0.5	3시간 초과
		0.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0.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0.1	1시간 이하

<별표 3-2>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점수(2) <개정 2012.7.22., 2013.3.1., 2014.9.1., 2015.3.1.>

평가항목		배점점수	비 고
학생 교육 참여	학생 연구 활동 지도교수(학회 또는 세미나 발표 포함), 의사-과학자 과정 지도교수	3.0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학생인턴과정(선택심화실습) 지도교수	3.0	
	PBL/CBL module, MEQ 개발	3.0	건당 환산. 임상실습 관련 내용은 참여교수의 서명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주(책)임교수 및 해당 병원 임상교육부학장의 확인이 필요함
	임상실습 소그룹 토의 module 개발	0.5	
	기초/임상의학 종합평가 문항개발	3.0	
	의사국시 문항개발/출제 참여	3.0	
	OSCE/CPX station 개발	3.0	
	e-Learning module 개발	3.0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0.5	
	임상실습지침서개발(간호학)	2.0	
	문제바탕학습(PBL) tutor, 임상실습 소그룹 토의 tutor	0.5	
	mini-OSCE/OSCE/CPX 참여	0.5	
	임상술기지도(skills lab) 참여	1.0	
	학생 진료역량 개발 지도 (피드백 및 재교육 포함)	1.0	1일 당 환산. 배점점수 × 참여일 수
	의사국시 실기시험 채점 참여	1.0	
	종합임상의학과과정 학습 지도	1.0	
	학생 국외전공연수/해외연수 인솔	1.0	지도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학생 선발과정 참여	입학전형 면접문항(MMI station) 개발	3.0	1일 당 환산. 배점점수 × 참여일 수
	입학전형 서류 심사	1.0	
	입학전형 면접 심사	1.0	
대학원 석·박사 배출	석사	1.0	배점점수 × 학위취득 지도학생수 (의학 및 간호학 학위에 한함)
	박사	1.5	
기타	기타 학생교육 관련 활동	0.5 이상	교무위원회 심의 후 결정 [단 경고의 경우 차감함]
	교육 관련 학장 서면 경고	1.0 이상	

* 학생 교육 관련 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 의학교육과정위원회, 의예과교육과정위원회, 통합교육과정책임·부책임교수회, 임상교육과정위원회, 간호학과교육과정위원회, 각병원별임상교육연구위원회, 간호학과실습교육위원회, 간호사-학사학위특별교육과정위원회, 임상표현문제바탕학습교육과정위원회, 임상수행능력평가운영위원회, 학생역량개발위원회, 의과대학학생선발위원회 등 학장이 인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별표 4> 의과대학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개정 2012.7.22.>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정점수	비 고
교내 보직	의약부총장, 의료원장, 부의료원장	5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대학장, 처(실)장, 대학원장, 부속병원장	5	
	부처(실)장, 부속병원부원장, 부학장, 대학원부원장	4	
	부학장보, 기타 부속(설)기관장, 부설연구소장	3	
	기타 부속(설)기관 부원장, 주(책)임 교수, 영어로 수업하는 교과목 담당교수	2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보직	1 이상	
교 내 위원회 (총장 위촉) 활 동	평의회 의장	4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 각종 위원회는 「각종위원회 현황」 참조<개정 2006. 4. 1.>
	각종 위원회 위원장	2	
	평의회 부의장, 간사	2	
	각종 위원회 위원	1	
	평의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1	
각종 수상	국제단체수여	5	- 건당 환산함
	국가수여	3	- 건당 환산함
	학교, 공공단체수여	2	- 건당 환산함
학회 활동	국제학회 회장	5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 임원의 범위 : 부회장, 이사, 간사, 총무, 고문, 감사 등
	국제학회 임원, 국내학회 회장 또는 이사장	4	
	국내학회 임원, 국제학회 편집위원	3	
	국내학회 지회장	2	
	국내학회 지회 임원, 국내학회 편집위원	1	
	기타 각종 교외연구소 연구위원	0.5	
사회 봉사	중앙정부자문(고문·평가)위원 각종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상임대표 또는 회장	3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 반영하여 계산 가능
	지방자치단체자문(고문·평가)위원 각종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임원 (공동대표,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고문 등)	2	
	공공단체자문(고문·평가)위원 산업체자문(기술고문)위원 의생명공학부 특성화사업 운영위원	1	
	신입생 유치를 위한 지역 방문홍보 공식 참가 실적 우수 교수	1	- 건당 환산함
	신입생 유치를 위한 지역 방문홍보 공식 참가 교수	1	- 건당 환산함(최대 1)
	국내외 대학 입학 박람회 공식 참가 교수	0.5	- 건당 환산함(최대 3)
	교내외 강연 또는 특강 각종 고시등 교외 시험문제 출제위원 TV 또는 라디오 출연 교내외 신문 또는 각종 언론매체 칼럼수준 게재물이나 보도 (연구업적 실적물과 중복인정 불가)	0.5	- 건당 환산함 (최대 5, 2002.3.1.실적부터 적용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보건산업진흥재단 등에 준하는 기관의 위촉으로 평가물을 심사할 경우	0.5	- 건당 환산함(최대 2)
	각종 교외 주최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수상 학생을 배출한 지도교수	0.5	- 건당 환산함(최대 2)
	각종학회 및 강좌의 좌장 및 진행자	0.5	- 건당 환산함
	대민 무료 진료 봉사	0.5	- 건당 환산함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봉사 활동 사항 (예 : 동아리 지도교수)	0.5 이상	- 건당 환산함

<별표 5> 의과대학 신규임용 최소 업적기준<개정 2017.9.1., 2018.9.1., 2019.3.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업적산출 포함 연한(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6년 이내	5년 이내
연구업적 최소실적			
기초의학교원	400%	1,000%	1,500%
임상의학교원	200%	500%	750%
인문사회이학교원	200%	500%	750%
간호학교원	400%	1,000%	1,500%
교육중심교원	100%	100%	200%
연구중심교원	600%	1,500%	2,500%
국외 SCI급 최소 논문 편수			
기초의학교원(의사)	3(1)편	9(3)편	8(3)편
기초의학교원(비의사)	4(2)편	12(6)편	10(5)편
임상의학교원(의사)	1(0)편	2(1)편	2(1)편
임상의학교원(치과의사)	1(0)편	2(0)편	1(1)편
인문사회이학교원	1(0)편	2(0)편	3(2)편
간호학교원	0(0)편	1(0)편	1(1)편
교육중심교원	1(0)편	2(0)편	3(1)편
연구중심교원	6(3)편	18(9)편	15(8)편
주1)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연구업적 실적(별표 2) 중 의학 및 간호학 관련 분야의 ISSN이 부여된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 저서, 편·역서, 특허만 인정함.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내 SCI 및 SCI(E)급(SCOPUS 포함) 학술지에 한함. 국외 전문학술지 중 SCI급 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SSCI(E), AHCI, SCOPUS 등재지에 한함.) <개정 2013.9.1., 2014.9.1., 2015.9.1., 2016.3.1., 2019.3.1.> 주2) 국외 SCI(E)급 최소 논문 편수에서 독자투고는 제외하며, 괄호 안의 편수는 심의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편수임. 다만, 인문사회이학교원(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과 교육중심교원 심의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국내 전문학술지급 논문을 국외 SCI급 논문 편수와 동일하게 인정함.<개정 2013.3.1., 2014.9.1., 2016.3.1.> 주3) 삭제 <2014.9.1.> 주4) 삭제 <2014.9.1.> 주5) 삭제 <2014.9.1.>			

<별표 6> 의과대학 재임용 최소 업적기준<개정 2017.9.1., 2019.3.1.>

구분	조교수	부교수
연구업적 최소 실적		
기초의학교원	250%	750%
병리학교원	160%	500%
임상의학교원	85%	250%
인문사회이학교원	85%	250%
간호학교원	250%	750%
교육중심교원	50%	100%
연구중심교원	400%	1,200%
교육업적 최소점수	1.5점	3점
(교육중심교원)	(60점)	(120점)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봉사업적 최소점수	2점	6점
(교육중심교원 및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주1)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연구업적 실적(별표 2) 중 의학 및 간호학 관련 분야의 ISSN이 부여된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 저서, 편·역서, 특허, ODA 연구비만 인정함.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내 SCI 및 SCI(E)급(SCOPUS 포함) 학술지에 한함. 국외 전문학술지 중 SCI급 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SSCI(E), AHCI, SCOPUS 등재지에 한함.) <개정 2013.9.1., 2014.9.1., 2015.9.1., 2016.3.1., 2017.9.1., 2019.3.1.> 주2) 삭제 <2014.9.1.> 주3) 교육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별표 3-1, 별표 3-2)에 기초하여 산정함.<신설 2013.9.1.> 주4) 봉사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별표 4)에 기초하여 산정함.<신설 2013.9.1.>		

<별표 7> 의과대학 승진임용 최저 소요연수 및 최소 업적기준<개정 2017.9.1., 2019.3.1.>

구분	부교수	교수	비고
직급별 최저 소요연수	6년	5년	
연구업적 최소 실적			승진예정일 기준 부교수 승진심의대상자는 최근 6년 이내, 교수 승진심의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업적 및 연수시간을 통산함. (본교 임용 후 업적)
기초의학교원	1,000%	1,500%	
임상의학교원	500%	750%	
인문사회이학교원	500%	750%	
간호학교원	1,000%	1,500%	
교육중심교원	100%	200%	
연구중심교원	1,500%	2,250%	
국외 SCI급 최소 논문 편수			
기초의학교원(의사)	9(3)편	8(3)편	
기초의학교원(비의사)	12(6)편	10(5)편	
임상의학교원(의사)	2(0)편	2(1)편	
임상의학교원(치과의사)	2(0)편	1(1)편	
인문사회이학교원	2(1)편	3(2)편	
간호학교원	1(0)편	1(1)편	
교육중심교원	2(1)편	3(1)편	
연구중심교원	18(9)편	15(8)편	
교육업적 최소 점수	4점	2.5점	
(교육중심교원)	(240점)	(200점)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봉사업적 최소 점수	5점	5점	
(교육중심교원 및 연구중심교원)	(1점)	(2점)	
교육관련 연수 최소 시간	15시간	15시간	
주1)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연구업적 실적(별표 2) 중 의학 및 간호학 관련 분야의 ISSN이 부여된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 저서, 편·역서, 특허, ODA 연구비만 인정함.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내 SCI 및 SCI(E)급(SCOPUS 포함) 학술지에 한함. 국외 전문학술지 중 SCI급 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SSCI(E), AHCI, SCOPUS 등재지에 한함.) <개정 2013.9.1., 2014.9.1., 2015.9.1., 2016.3.1., 2017.9.1., 2019.3.1.>			
주2) 국외 SCI(E)급 최소 논문 편수에서 독자투고는 제외하며, 괄호 안의 편수는 심의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편수임. 다만, 인문사회이학교원(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과 교육중심교원 심의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국내 전문학술지급 논문을 국외 SCI급 논문 편수와 동일하게 인정함.<개정 2013.3.1., 2014.9.1., 2016.3.1.>			
주3) 삭제 <2014.9.1.>			
주4) 삭제 <2014.9.1.>			
주5) 삭제 <2014.9.1.>			
주6) 삭제 <2014.9.1.>			
주7) 교육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별표 3-1, 별표 3-2)에 기초하여 산정함.<개정 2013.9.1.>			
주8) 봉사업적 최소 실적은 의과대학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정점수(별표 4)에 기초하여 산정함.<개정 2013.9.1.>			

종류		저자구분	저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논문	원저	주저자	100%	70%	50%	40%	40%
		공저자		35%	25%	20%	20%
	중(총)설, 증례 보고	주저자	50%	35%	25%	20%	20%
		공저자		17.5%	12.5%	10%	10%
	독자 투고(letter to editor)		25%	10%	7.5%	5%	5%
	저서, 보고서 및 특허		100%	50%	33%	25%	20%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연구비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 200만원 당 20%				

주1)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임.

주2) 증례보고는 논문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고찰을 포함한 400자 이상의 본문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야 함.

주3) 독자투고 중 research letter (letter to the editor 포함)인 경우 심의를 통해 ‘증례보고’와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주4) ODA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 공식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기준(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산하여 인정함. 점수 배분은 해당과제 책임교수가 연구참여율(지분율)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해당점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함. <신설 2017.9.1.>